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82
----------	----

제출연월일 : 2011. 08. 24

제출자 : 정문섭 의원 외 4인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11년 9월 2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없음

심 사 계 획

1. 활동목적

-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속한 의사진행

2. 심사안건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011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3. 활동기간

- 2011년 9월 2일, 1일간으로 한다.

4. 구 성

- 장문혁 의원, 함명섭 의원, 박종욱 의원, 이정율 의원
정문섭 의원

5. 운영계획

일 시	차 수	내 용	비 고
2011. 9. 2 (금)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